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 중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한편,

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1. 21. ~ 3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　　호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“지식재산권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자금의 지원) 법 제17조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
2.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

부　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	4. ---------- 지식재산권 ----------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6조(자금의 지원) 법 제17조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	1.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
	2.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389